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일반 및 특별회계

決算檢査意見書

수신 : 서대문구청장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를 따로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검사기간 : 2016년 4월 25일 ~ 5월 24일(30일간)

○ 검사위원

- 대표검사위원 : 김 순 길(서대문구의회 의원)
- 검 사 위 원 : 장 원 석(전직 공무원)
- 검 사 위 원 : 신 현 승(세무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결산검사위원

目 次

I. 결산검사 의 견 서	1
II. 결산검사결과 총평	2
III. 회계별·분야별 결산검사에 대한 세부내용	
1. 일반회계	5
2. 특별회계	10
3. 기금결산	13
4. 채권현재액 결산	14
5.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결산	14
6.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	15
IV. 개선 및 권고사항	16

I. 결산검사의견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

2016년 5월 24일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감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16년 4월 25일부터 2016년 5월 24일까지(30일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한 결과, 세입·세출,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재산 및 채권, 기금과 금고의 결산 내용과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단, 검사과정에서 나타난 집행내용상 개선권고 사항의 의견을 제시하니, 다음 회계연도 예산 운영과 결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결산감사위원

대표위원 김 순 길

위 원 장 원 석

위 원 신 현 승

II. 결산검사 결과 총평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서 및 결산설명 첨부자료 등 결산 관계서류를 토대로 검사를 수행한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총괄 재정운영

(1) 세입·세출 결산 현황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수납액	지출액	순세계잉여금	순수세입액
당해연도('15)		423,033	429,655	353,783	45,245	380,448
전년도('14)		371,151	375,967	326,759	32,478	330,505
증감	금액	51,882	53,688	27,024	12,767	49,943
	비율	14.0%	14.3%	8.3%	39.3%	15.1%

- 세입예산현액 423,033백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429,655백만원(101.6%)이며,
- 세출예산현액 423,033백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353,783백만원(83.6%)임.
- 또한 전년대비 수납액은 14.3% 증가하고, 순세계잉여금은 39.3%, 지출액은 8.3%, 순수세입액은 15.1% 각각 증가하였음.

(2) 세입세출 결산 주요내용 분석

○ 세입결산의 경우

-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은 429,655백만원으로 전년도 375,967백만원 대비 53,688백만원(14.3%) 증가하였으며, 세입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과 보조금으로 전체 재원의 62.1%임
- 지방세는 전년대비 5.6%가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동원아이엔씨 및 세브란스병원 감면규정 일몰에 따른 과세 전환 및 가재울·북아현뉴타운 공시지가 상승으로 재산세가 3.4% 증가하였음.
-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0.0%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이 신설되어 2,442백만원 증가, 홍제2구역 재개발, 북아현1-2재정비촉진구역 등 구유지 매각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익금이 전년대비 209.1%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함.
- 조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의 산정재원인 서울시 보통세 재원규모가 증가하여 전년대비 10.9%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사회복지비 부담 증가로 전년대비 22.3% 증가함.
- 지방채는 없으며, 예치금 회수 등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 전년도 이월사업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등으로 전년대비 9.2% 증가함.

○ 세출결산의 경우

-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은 353,783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27,024백만원(8.3%)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결산 중 주요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163,514백만원(47.0%), 기타 (행정운영경비) 91,315백만원(26.2%), 일반공공행정 32,913백만원 (9.5%)이며 전년도 수준임.

- 최근 지출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국토 및 지역개발(46.3%), 산업·중소기업(37.5%)임.

· 국토 및 지역개발 주요 증가요인은 창의어린이놀이터 조성 809백만원, 금화시범아파트 철거 공사 618백만원, 홍제2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지급 259백만원 지출이며,

· 산업·중소기업 주요 증가요인은 영천시장 신시장모델 육성 사업 368백만원, 메르스사태 대응 공공근로 인건비 280백만원, 아파트 경비직 고령근로자 고용지원 152백만원 지출에 기인함.

○ 순세입 측면에서 보면

2015년도 순수세입액(전년도 잉여금 제외)은 380,448백만원이고, 세출액은 353,783백만원으로서 세입이 세출보다 7.5%(26,665백만원) 증가하였음.

Ⅲ. 회계별·분야별 결산검사에 대한 세부내용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공유재산 및 물품, 채권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회계

가. 세입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결손처분액	미수납액
당해연도(' 15)		405,124	446,681	410,057	4,282	32,343
전 년 도(' 14)		357,487	395,028	358,335	2,758	33,935
증 감	금 액	47,637	51,653	51,722	1,524	△1,592
	비 율	13.3%	13.1%	14.4%	55.3%	△4.7%

① 세입결산 개요

- 당해연도 수납액은 410,057백만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358,335백만원 대비 14.4% 증가하였으며,
- 예산현액 405,124백만원 대비 1.2% 증가된 4,933백만원이 많이 수납됨. 이는 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와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의 증가에 기인한 것임.
-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1.8%로 징수율이 전년대비 1.1% 증가하였고, 결손처분은 4,282백만원으로서 이는 무재산, 시효 소멸 등으로 발생한 것임.

- 다음연도 이월액은 징수결정액의 7.2%인 32,343백만원으로 전년보다 1.3% 감소하였으며, 이는 납세의무자 무재산, 행방불명 및 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등으로 기인한 것임.
- 일반회계 총수납액은 서대문구 금고인 우리은행 서대문구청지점 금고 마감(2016.2.20. 현재) 계수금액과 대조한 바 일치함.

② 세입분야에 대한 결산검사 의견

㉠ 지방세

(단위 : 백만원)

세 목	2015 회계연도			2014 회계연도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비율(%)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비율(%)
계	65,411	63,963	97.8	61,659	60,379	97.9
등록면허세	8,917	8,876	99.5	7,134	7,088	99.4
주민세	1	1	100	1	1	100
재산세	55,213	54,729	99.1	53,332	52,944	99.3
지난연도수입	1,280	357	27.9	1,192	346	29.0

- 당해연도 지방세의 실제 수납액은 63,96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5.9% 증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7.8%로 전년대비 0.1% 감소하였음.
- 지난연도 수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전년도에 비해 1.1% 감소하였음.
-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구체적 분석으로 징수독려 및 채권확보 등의 체납분 징수를 위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함.

㉔ 세외수입

(단위 : 백만원)

세 목	2015 회계연도			2014 회계연도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비율(%)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비율(%)
계	69,592	34,415	49.5	66,340	30,927	46.6
재 산 임 대 수 입	459	446	97.2	594	566	95.3
사 용 료 수 입	5,990	5,859	97.8	5,805	5,703	98.2
변상금 및 위약금	525	345	65.7	743	535	72.0
과 태 료	1,499	699	46.6	1,155	527	45.6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4,160	2,239	53.8	5,431	2,439	44.9
지 난 연 도 수 입	32,707	4,896	15.0	33,184	2,559	7.7
기 타 수 입	24,252	19,931	82.2	19,428	18,598	95.7

- 당해연도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49.5%로 2014년도 보다 2.9% 증가하였으며,
- 특히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과 지난연도수입은 전년대비 수납률이 각각 5.9%, 7.3% 증가하였으나, 지난연도수입 수납률이 15.0%로 여전히 낮아 채권확보 등 철저한 징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나. 세 출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 산 성 립 후 증 감				예산 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전용	이체				
당해연도('15)	392,845	12,279	± 2,137	± 902	± 4,667	405,124	347,928	24,902	32,294
전년도('14)	346,099	11,388	± 1,889	± 296	± 766	357,487	321,100	12,279	24,108

① 세출결산 개요

-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392,845백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2,279백만원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05,124백만원이고, 예비비 사용액은 2,137백만원이며, 전용은 902백만원임.
- 예비비 사용은 기초연금 구비 부족분과 故 김영삼 前대통령 분향소 설치·운영 등에 사용함.
- 예산전용은 대형폐기물 처리비 지급 외 26건에 대하여 902백만원을 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고, 예산의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라 4,667백만원임.
-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5.9%에 해당하는 347,928백만원이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외 37개 사업에 15,984백만원을 명시이월 하고, 신촌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용역 외 43개 사업에 8,918백만원을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사고이월 함.
- 집행잔액은 32,294백만원이며 주된 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1,829백만원, 예산절감(유보액포함) 1,361백만원, 예산 집행잔액(낙찰차액 등) 14,441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468백만원, 예비비 1,195백만원임.
- 일반회계 총 지출액은 서대문구 금고인 우리은행 서대문구청지점 금고 마감(2016.2.20. 현재) 계수금액과 대조한 바 일치함.

② 세출분야에 대한 결산검사 의견

○ 분야별 불용액 발생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회계연도		
	예산현액	집행잔액	비 율(%)
계	405,124	32,294	8.0
일 반 공 공 행 정	38,406	4,273	11.1
공공질서 및 안전	1,423	190	13.4
교 육	7,976	430	5.4
문 화 및 관 광	14,030	939	6.7
환 경 보 호	19,923	1,528	7.7
사 회 복 지	183,795	14,357	7.8
보 건	11,312	1,054	9.3
농 립 해 양 수 산	1,160	70	6.0
산 업, 중 소 기 업	11,996	1,110	9.3
수 송 및 교 통	7,764	823	10.6
국 토 및 지 역 개 발	7,680	676	8.8
예 비 비	1,195	1,195	100
기 타	98,464	5,649	5.7

○ 위 집행잔액 내역을 살펴보면 거의 모든 분야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2015회계연도의 집행잔액은 32,294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0%이며, 전년도 집행잔액 24,108백만원(6.7%) 보다 1.3% 증가 하였으며 집행잔액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세출예산 편성시 각 사업별로 전년 결산내용과 사업계획 범위, 사업시기 및 실행 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편성하여야 할 것임.

2. 특별회계

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지출액	집행잔액	결손처분
당해연도(' 15)	1,796	2,006	2,006	213	1,583	-
전 년 도(' 14)	1,278	1,738	1,697	50	1,228	41

- 2015회계연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수납액은 전년도에 비해 18.2% 증가하였음.
- 주요 세입원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 잉여금이며, 전체 수납액은 2,00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8.2% 증가함.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수납액과 지출액은 서대문구 금고인 우리은행 서대문구청지점 금고 마감(2016.2.20. 현재) 계수 금액과 대조한 바 일치함.

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지출액	집행잔액
당해연도(' 15)	397	498	364	319	78
전 년 도(' 14)	326	490	324	250	76

- 2015회계연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수납액은 전년도 대비 12.3% 증가하였음.
- 예산현액 397백만원 대비 지출액은 319백만원(80.4%)로 의료급여 대상자의 건강생활유지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및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가 72.4%를 차지하고 있음.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수납액과 지출액은 서대문구 금고인 우리은행 서대문구청지점 금고 마감(2016.2.20. 현재) 계수금액과 대조한 바 일치함.

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지출액	집행잔액
당해연도(' 15)	0	0.6	0.6	0	0
전 년 도(' 14)	22	23	23	22	0

- 예산편성할 가용재원이 없고, 상위법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어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예산을 편성하지 않음.
 - 2016년 추경예산에 잉여금 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한 후 폐지예정
- 당해연도 수납액은 0.6백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과 이자수입임.
- 기반시설 특별회계 수납액과 지출액은 서대문구 금고인 우리은행 서대문구청지점 금고 마감(2016.2.20. 현재) 계수 금액과 대조한 바 일치함.

라. 주차장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결손처분
당해연도(' 15)	15,717	26,338	17,227	5,324	1,924	8,469	306
전 년 도(' 14)	12,037	24,861	15,588	5,337	800	5,900	374

- 2015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5,717백만원이며, 지출액은 8,469백만원(53.9%)임.
- 당해연도 수납액은 17,227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5% 증가함.
- 세입 주요 증가항목은 순세계잉여금(546백만원), 거주자우선주차 및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수입(234백만원), 도시관리공단 사업비 정산 등 기타수입(127백만원), 지난연도수입(28백만원) 등이며, 감소항목은 견인차량보관소사용료(5백만원), 시도비보조금(39백만원) 등임.
- 주차장 특별회계 수납액과 지출액은 서대문구 금고인 우리은행 서대문구청지점 금고 마감(2016.2.20. 현재) 계수 금액과 대조한 바 일치함.

3. 기금결산

기금결산 보고서를 검사한 결과 2015회계연도 말 기금 현재액은 다음과 같으며 은행잔고 증명서(2016.1.20. 현재)와 일치함.

(단위 : 백만원)

종류별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 [㉠]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 [㉡] = [㉠] + [㉢]
			계 [㉢] = [㉠] - [㉣]	조성액 [㉣]	사용액 [㉣]	
계		12,852	△110	4,124	4,234	12,742
중소기업육성기		3,360	△532	1,419	1,951	2,828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1,263	4	30	26	1,267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566	△13	12	25	553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545	△15	13	28	530
성평등기금		1,168	△1	28	29	1,167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1,225	△655	63	718	570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운영기금		-	471	471	-	471
옥외광고정비기		651	132	540	408	783
도로굴착복구기		702	181	800	619	883
재난관리기금		2,369	289	627	338	2,658
식품진흥기금		1,003	29	121	92	1,032

4. 채권 현재액 결산

2015회계연도 채권에 대한 결산을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익년도 이행기간 도래예정액
계	10,935	4,119	3,663	11,392	1,204
일반회계	6,947	341	394	6,894	20
특별회계	496	404	497	404	124
기 금	3,492	3,374	2,772	4,094	1,060

5.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검사한 결과 2015회계연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다음과 같음.

(단위 : 개, m², 백만원)

구분 종류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수량	면적	가격	증			감			수량	면적	가격
				수량	면적	가격	수량	면적	가격			
합 계	16,692	1,314,450	1,258,618	1,220	20,615	16,359	101	12,628	8,290	117,811	1,322,437	1,266,687
토 지	4,276	1,188,347	1,109,014	174	19,887	13,038	100	12,628	8,278	4,350	1,195,606	1,113,774
건 물	129	125,413	127,335	1	675	2,345	-	-	0	130	126,088	129,680
임 목 축	9,745	-	7,939	992	-	23	-	-	0	10,737	-	7,962
공 작 물	382	-	12,526	51	-	878	1	-	12	432	-	13,392
기계기구	1	-	6	-	-	0	-	-	0	1	-	6
무체재산	9	-	13	-	-	0	-	-	0	9	-	13
유가증권	102,144	-	940	-	-	0	-	-	0	102,144	-	940
용익물건	4	537	818	2	53	75	-	-	0	6	590	893
회 원 권	2	153	27	-	-	0	-	-	0	2	153	27

6.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검사한 결과 2015회계연도 말 물품 현재액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전년도말 보유현황		당해연도 증감						당해연도말 보유현황	
수량	금액	증		감		비교증감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1,032	6,863	96	497	22	238	1,106	7,122	1,034	8,010

IV. 개선 및 권고사항

1. 세출예산 편성시 사업계획 검토 등 사전조사 미비

○ 2015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집행잔액 총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유보액)	낙찰차액 등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비고
32,293 (100%)	11,829 (36.6%)	1,361 (4.2%)	14,440 (44.7%)	3,468 (10.7%)	1,195 (3.7%)	

○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 집행잔액은 총 32,293백만원이며, 그 중에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 잔액은 11,829백만원으로 36.6%에 이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3,468백만원으로 10.7%임.

(문제점)

○ 위 집행잔액 현황에 의하면 낙찰차액 등과 보조금 집행잔액은 각각 44.7%와 10.7%로 다른 회계연도와 비교하여 다소 감소한 반면, 계획변동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은 36.6%로 오히려 증가된 실정임.

이는 세출예산편성시 해당부서에서 사업의 물량, 사업기간, 시행가능성, 사업의 효과,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 등, 사업계획 전반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검토 없이 예산이 편성된 사례로 판단되며, 세부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시기 등을 사전에 고려치 않고, 외부재원 확보를 위하여 이에 필요한 예산을 미리 서울시 등에 교부요청하여 교부된 예산 전액이 다음해로 이월되는 사례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됨.

(개선방안)

○ 앞으로 해당부서는 물론 전 부서에서는 세출예산 편성시 사업의 물량, 사업기간, 시행가능성,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 등, 사업계획 전반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거친 후 예산편성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또한 해당부서에서는 세부사업계획이 확정된 후 사업시기 등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한 후 이에 필요한 예산을 교부요청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 해당부서 : 정책기획담당관, 사업시행 전 부서

2. 입찰계약공사의 설계 변경 과다

○ 2015회계연도 각종입찰계약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종 류	최초계약		설계변경 등		증감액	비율(%)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143	33,759,504	85	35,114,977	1,355,473	59.4	4.0	지방계약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74조 제5조
공사	98	28,534,522	68	29,810,359	1,275,837	69.3	4.5	
용역	37	4,746,347	15	4,808,005	61,658	40.5	1.3	
물품	8	478,635	2	496,613	17,978	25.0	3.8	

(증감비율은 최초계약에 대한 설계변경 건수 및 증감액에 대한 비율임)

○ 2015회계연도 각종입찰계약 현황에 의하면 최초계약은 총 143건에 33,759,504천원이며 그 중 설계변경 등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건수 및 금액은 총 85건에 35,114,977천원으로 그 차인증감액이 1,355,473천원이며, 그 증감비율은 각각 59.4%(건수)와 4.0%(금액)에 달하고 있음.

○ 지방계약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공사, 물품, 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동법 시행령 제74조 및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문제점)

○ 위 2015회계연도 입찰계약과 설계변경 등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현황을 살펴보면 최초계약건수(143건)에 대한 설계변경 건수(85건)의 비율이 무려 59.4%에 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 증감액도

1,355,473천원(4.0%)이나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너무 과다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고, 대부분 공사분야에 편중되어 있음.

또한 공사 1건당 설계변경 횟수가 상당히 많은 경우도 있고, 설계변경사유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사례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공사금액증감은 물론, 공사기간 연장 등으로 민원이 발생할 우려도 있으며, 이에 따른 예산의 낭비도 있을 수 있음.

- 설계변경은 당초계약의 목적 및 본질 등을 훼손할 만큼의 설계변경을 해서는 안 되며, 이와 같은 경우 공사를 새로 발주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사례도 일부 있음.

(개선방안)

- 설계변경공사의 대부분이 발주부서에서 이미 설계용역 등을 거쳐서 입찰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수건의 과다한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증감액이 1,355,473천원이나 발생하였음. 앞으로 해당부서에서는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설계용역내용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공사기간 중에 가급적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 또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른 설계변경 규정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과도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 않도록 개선하시기를 권고합니다.
- 해당부서 : 토목과, 안전치수과 등 설계변경이 있는 전 부서

3. 세출예산의 사고이월 최소화

○ 회계연도별 사고이월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구 분	2012	2013	2014	2015	비 고
예산현액	311,450	349,771	357,487	405,124	지방재정법 제50조
사고이월액	13,939	4,159	7,618	8,918	
비율(%)	4.48	1.19	2.13	2.20	

○ 2012회계연도부터 2015회계연도까지의 최근 4년간 세출예산 사고이월 추이를 살펴보면 예산현액 대비 사고이월액 비율(%)이 다소 감소하는 듯하다 2015회계연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이는 각종 보조금 등의 예산지원 사항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문제점)

○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지출 원인행위는 하였으나 예산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예산을 이월하여 사용하는 예산으로써, 그 주된 원인은 절대 공사기간 부족에 의한 이월이 대다수이고, 이들 사업 대부분이 보조사업으로 예산지원이 너무 늦어 절대적인 사업기간의 부족과 사업계획의 변경(설계변경 등) 등으로 사고이월이 불가피한 점 등은 인정되나 사업예산이 가급적 하반기에 편중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에 신중을 기하도록 이미 의견제시를 한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일부사업에서는 개선되지 않고 있음.

(개선방안)

○ 사고이월이 있는 해당부서에서는 사고이월예산이 재이월이 불가한 점과 사업기간연장으로 인한 민원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사고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시기를 권고합니다.

○ 해당부서 : 사고이월이 있는 전 부서

4. 입찰계약공사의 계약체결 부적정

○ 2015 입찰계약공사의 분할계약 사례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편성액	예산집행내용				비고
			계약일자	계약금액	계약방법	분할구역	
토목과	주택가 좋은 빛 환경조성 보안등 보수공사 (연간단가)	180,000	2015.2.9.	70,050	전자수의	제2구역	
			2015.2.25.	87,810	제한경쟁	제1구역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및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0호)

○ 위 주택가 좋은 빛 환경조성 보안등 보수공사는 연간단가계약공사로써 발주부서(토목과)에서 2015.2.9.과 2015.2.25. 2회에 걸쳐 제1구역과 제2구역으로 구분, 공사시기와 공사물량을 분할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례임.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동일구조물 공사 및 단일공사로써 설계 등에 따라 전체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문제점)

○ 위 주택가 좋은 빛 환경조성보안등 보수공사는 지방계약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 규정에 의한 연간단가계약공사로써,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동일구조물 공사 및 단일공사이며 예산편성액(180,000천원)도

단일 건으로 편성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발주부서에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규정의 「공사의 분할계약금지」 원칙을 무시하고 2015.2.9.과 2015.2.25. 2회에 걸쳐 제1구역과 제2구역으로 구분, 공사시기와 공사물량을 분할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를 위반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음.

- 또한 단일공사는 기본적으로 통합발주를 하여야하고,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통합발주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례에서는 통합발주대상사업을 공사시기와 지역, 물량 등을 분할하여 2개의 공사로 나누어 분할발주를 하였으며, 이 경우 해당공사의 낙찰율도 차이가 있고, 일부예산이 낭비될 수도 있음.

(개선방안)

- 앞으로 해당공사발주부서에서는 위와 같이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써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공사시기나 공사물량을 분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지방계약법령 등 입찰에 관련된 제반규정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위와 같은 분할발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합니다.

- 해당부서 : 토목과, 공사담당 전 부서

5. 연간단가계약공사의 물량추계 철저

○ 2015회계연도 연간단가계약 변경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부서명	최초계약		물량증감 계약변경		증감액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21	4,701,696	19	5,761,495	1,236,432	지방계약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74조, 제79조
토 목 과	10	2,257,725	10	2,716,179	458,454	
안전치수과	5	1,866,834	5	2,665,855	799,021	
푸른도시과	3	186,496	3	189,447	2,951	
교통행정과	3	390,641	1	190,014	-23,994	

○ 위 2015회계연도 연간단가계약공사의 계약변경현황에 의하면 당초 4개 부서에서 총 21건의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중에서 19건을 물량증감에 의한 계약변경을 하여 이에 따른 계약금액 증감액이 1,236,432천원이 발생하였음.

○ 연간단가계약공사는 지방계약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일정기간 계속하여 보수, 복구 등의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미리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문제점)

- 위 연간단가계약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대부분 물량증감이 있을 수 있고, 이에 따른 계약변경으로 계약금액증감액이 발생할 수 있으나 공사물량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어 당초 예상보다 공사금액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사례도 일부 있음.

- 이는 해당부서에서 세출예산편성요구시 사업계획수립의 가장 기본적인 공사물량 추계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연간단가계약공사는 대부분 매년 같은 시기에 반복되는 공사로서 공사물량 추계시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과거 5년간의 공사물량을 감안하여 당해연도 공사물량을 추계토록 되어 있어 공사물량추계에 어려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부서의 공사물량추계가 잘못되어 예산이 일부 낭비되는 사례도 있음.

(개선방안)

- 앞으로 해당부서에서는 연간단가계약공사의 물량추계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편성부서에서도 해당공사의 물량추계가 적절한지의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한 후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 해당부서 : 토목과, 안전치수과, 푸른도시과, 교통행정과,
정책기획담당관

6. 이월사업비 과다발생 및 사업추진 실적부진

○ 2015년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 현황(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분 이월별	건수	예산 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이월율 (%)	비고
합계	82	50,213,094	31,014,211	18,966,065	24,901,976	6,345,053	49.6	지방재정법 제50조
명시이월	38	27,710,555	10,130,109	6,999,656	15,984,283	4,726,616	57.7	
사고이월	44	22,502,539	20,884,102	11,966,409	8,917,693	1,618,437	39.6	

○ 위 2015년도 이월사업비 집행결과에 의하면 다음연도이월액이 24,901,976천원으로 당해사업예산의 49.6%에 해당되어, 이월사업비가 과다하게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월사업도 주로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보수정비 등 문화 및 관광 분야에 편중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사업추진실적도 대단히 부진한 실정임.

(문제점)

○ 세출예산의 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내에 예산집행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거나, 완료하지 못할 경우,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예산으로써 대부분 보조사업으로 그 주된 사유를 살펴보면 보조금 등의 교부지연과 설계변경, 철거대상건축물의 보상협의 지연, 기타 학사일정 관련 등으로 절대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부득이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액이 다음해로 이월되어 이월사업비가 과다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여짐.

- 또한 당해사업의 시기조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당해연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 조기발주 등 특단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도 일부분 있는 것으로 보여짐.

(개선방안)

○ 앞으로 기확보된 예산사업은 해당부서에서 조기에 발주하여 당해연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을 할 것이며,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사업기간의 적정성 등 사업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예산을 교부요청하고 사업예산이 가급적 하반기에 편중되지 않도록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부서 : 문화체육과, 자치행정과, 토목과, 푸른도시과,
교육지원과 외 14개 부서

7. 사업예산(편성액) 전액이 불용된 사례

○ 2015회계연도 사업예산 불용현황

(단위 : 천원)

구분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율(%)	비고
합계	6개 부서 7개 사업	214,300	-	214,300	100	
사회복지과	여성장애인출산 지원금지원	2,900	-	2,900	100	
어르신복지과	노인복지센터 건립	70,000	-	70,000	100	
도시관리과	서대문공공 디자인사업	4,000	-	4,000	100	
안전치수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운영	1,400	-	1,400	100	
안전치수과	수해복구비지원	20,000	-	20,000	100	
의약과	서울형어르신 건강증진사업	20,000	-	20,000	100	
교통관리과	창천문화공원 지하주차장건립	66,000	-	66,000	100	

○ 위 2015회계연도 부서별 사업예산 불용현황에 의하면 해당사업 세출예산 불용액이 7개 사업에 총 214,300천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예산편성액 전액이 집행되지 않고 불용처리된 사례임.

(문제점)

○ 위와 같이 사업예산전액이 불용된 경우는 비록 예산의 규모는 크지 않지만 해당부서에서 세출예산편성시 사업의 규모, 시기, 집행 상황 등을 고려, 수요조사 및 정확한 분석 등을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편성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사업에 대한 불용액 발생의 정확한 예측도 어렵겠지만, 사업계획

변동 등, 예산이 불용될 것이 예상될 경우 추경예산에 감액편성하여 예산의 합리적 운용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액조치 등을 하지 않고 불용처리한 점은 예산운용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위 사업(7개 사업)은 세출예산전액이 집행되지 않고 불용된 점에 대하여 적절치 못한 예산요구 및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됨.

(개선방안)

○ 앞으로 해당부서에서는 사업예산의 불용발생이 예상되거나 확실시 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추가경정예산에 감액조치하여 예산집행과 운용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부서는 사업예산불용액을 저감하여 타 사업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위와 같이 사업예산전액이 불용될 경우는 사업선정의 적정성 판단 결여로 추정되는바 이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부서 : 사회복지과 등 위 6개부서, 정책기획담당관 등 전 부서

8. 세출예산 집행잔액과 이에 대한 문제점

○ 회계연도별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연도	예산액(A)	총 집행잔액 (보조금 등 5개 분야)(B)	집행잔액 (낙찰차액 등)(C)	비율(%)		비 고
				B/A	C/B	
합계	1,112,381	90,591	44,991	8.1	49.7	
2013	349,771	34,189	17,370	9.7	50.8	
2014	357,487	24,108	13,181	6.7	54.7	
2015	405,123	32,294	14,440	7.9	44.7	

※ 복지분야 4개부서 집행잔액 ; 14,418백만원(총 집행잔액 대비 44.6%)

○ 회계연도별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 전체예산에 대한 총 집행잔액의 비율이 평균 8.1%에 이르고 2015년에는 7.9%로 전년 대비 총 집행잔액이 1.2%, 8,186백만원 더 증가하였으며, 또한 총 집행잔액에 대한 낙찰차액 등의 집행잔액 비율도 44.7%에 불과하지만 금액면으로는 전년 대비 1,259백만원 증가하였음.

(문제점)

○ 이는 사업부서에서 세출예산편성 요구시 이월사업비에서와 같이 사업계획수립에 따른 사업시행 가능성, 사업시기, 물량 등 예상되는 제반 문제점 등을 면밀하게 조사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요구한 것으로 보여 지며, 이로 인하여 해당사업에 대한 세출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집행잔액도 더 많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됨.

○ 특히 계획변경 등으로 집행사유가 발생치 않는 사업 중의 일부는 처음부터 예산편성이 되지 않아도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해당부서에서 요구한 내용 그대로 예산이 편성됨으로써 구 전체 가용재원이 부족하여 당해연도에 꼭 필요한 사업까지 이를 시행하지 못한 사례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개선방안)

○ 앞으로 집행잔액이 편중되어 있는 부서를 포함한 전 부서에서는 세출예산편성 요구시 당해사업의 사업계획에 대한 사업의 시행 가능성, 시기, 사업물량 등, 예상되는 제반 문제점 등을 사전에 면밀하게 조사, 검토한 후 예산편성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예산편성부서에서도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를 충분히 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 해당부서 : 사회복지과 등 전 부서, 정책기획담당관

9. 각종공사에 대한 설계용역 필요성 검토

○ 회계연도별 용역예산 집행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구 분	2013		2014		2015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55	1,494,678	46	1,311,579	54	1,407,666	
설계용역	37	898,004	35	934,470	40	765,267	
연구용역	18	596,674	11	377,109	14	642,399	

○ 2015년도 용역예산 집행건수 및 금액은 총 54건에 1,407,666천원이며, 그 중에서 공사설계용역은 40건에 765,267천원임. 또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3개년 간 설계용역현황에 의하면 건수면에서는 다소 증가하였으나 금액면에서는 오히려 감소함.

(문제점)

○ 위 2015년도 용역예산 집행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종 입찰계약 공사의 대부분이 설계용역을 거쳐서 발주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예산 집행액도 매년 다소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아직까지도 상당한 액수(765,267천원)의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 실정임.

- 설계용역은 일반적으로 사업계획상 공정이 많고, 공사규모와 공사금액이 클 뿐만 아니라 공사의 난이도 등이 높을 경우에 실시하여야 함에도 발주부서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공사를 설계용역에 의존하고 있음. 이 경우 설계용역기간이 평균 1~3개월이 소요되고 많게는 6개월까지 소요되는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입찰계약공사가 설계용역을 거쳐서 발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기간 동안 설계변경 건수 등은 여전히 감소하고 있지 않는 추세임.

- 위와 같이 설계용역 발주공사의 경우 설계용역 소요기간과 설계심의, 계약심사, 입찰실시 등의 기간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시급한 공사를 적기에 발주하지 못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음.

(개선방안)

- 앞으로 각종공사의 발주부서에서는 해당공사에 대한 설계용역이 꼭 필요한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설계용역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계용역의 경우에도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하고 가급적 설계용역 기간을 단축하여 해당공사가 적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부서 : 각종 공사가 있는 전 부서

10. 세출예산의 예비비 집행(사용) 부적정

○ 2015 세출예산 예비비 사용 현황(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지출결정 일	집행금액	집행사유	비고
지 역 활성화과	신촌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2015. 2. 5.	50,000	2015 신촌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관련 시·구 매칭 구비 부담금 지출	
어 르 신 복 지 과	기초연금	2015. 12. 3.	2,032,777	2015 기초연금 내시액에 따른 구비 부담금 부족분 지급	

※ 지방자치법 제129조,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시행령 제48조

○ 위 예비비 집행사항을 살펴보면 해당부서에서 신촌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시·구 매칭 구비 부담금과 기초연금 내시액에 따른 구비 부담금 부족분을 지급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의 예비비 50,000천원과 2,032,777천원을 각각 집행하였음.

○ 예비비는 본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써,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임.

(문제점)

○ 예비비 제도를 설치한 근본 취지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 제도로써, 예비비의 지출제한은 그 성격이나 제도설치 취지의 측면에서 내재적 제약과 실정법상의 제약으로 이를 구분하고 있음.

○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우리구 재정여건상 부득이한 경우로 볼 수 있으나 이는 업무추진비나 보조금 등과 같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의 예비비 사용제한(예비비의 지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예비비로 이를 지출할 수 없는 부적정한 예산집행 사례로 볼 수 있음.

(개선방안)

○ 앞으로 해당부서는 물론 전 부서에서는 세출예산의 예비비 집행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비 집행(사용)에 관한 규정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신 후 집행하시기 바라며, 특히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의 예비비 집행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부서 : 지역활성화과, 어르신복지과, 전 부서

11. 세외수입(법규위반과태료등) 체납액 징수 철저

○ 2015년도 부서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부서명	세외수입항목	체납액	징수액	징수율	당초 부과부서
합 계	6개 항목	30,563,999	3,657,939	11.97	
세 무 2 과	건축이행강제금	4,217,929	1,579,511	37.45	건축과,주택과
"	자동차검사과태료	3,832,135	237,216	6.19	교통행정과
"	배출가스정밀검사과태료	2,019,179	46,983	2.34	"
"	자동차책임보험과태료	8,348,825	412,989	4.95	"
푸른도시과	건축이행강제금 등	2,986,682	358,003	11.99	푸른도시과
교통관리과	주·정차위반과태료 (주차장특별회계)	9,159,249	1,023,237	11.77	교통관리과

○ 위 2015년도 부서별 세외수입체납액 징수현황은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일반 및 특별회계) 중에서 그 규모가 비교적 크면서 징수율이 저조한 항목들로서 3개 부서, 6개 항목의 체납액 총액이 30,563,999천원에 이르고, 그 중 3,657,939천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이 11.97%로 구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14.9%보다 더 저조한 실정임. 특히 자동차 책임보험과태료체납액은 8,348,825천원으로 다른 세외수입항목과 비교하여 체납액도 많고, 그 징수율도 4.95%에 불과함.

(문제점)

- 2015회계연도 세입결산현황에 의하면 세외수입총액(41,264백만원, 특별회계 포함)이 구 전체 세입총액(429,655백만원)에 대한 재원별 구성비가 9.6%를 점유하고 있어 구 전체 세외수입징수액(체납징수 포함)이 세출예산편성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개선방안)

- 위 세외수입 체납액 관련 부서에서는 세외수입징수액이 우리구 전체 세입총액과 세출예산편성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감안하여 세외수입(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통합징수방법을 더욱 발전시켜 다음회계연도에도 보다 나은 징수실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를 권고합니다.

- 해당부서 : 세무2과, 푸른도시과, 교통행정과 등 세외수입이 있는 전 부서(37개)

12. 노인사회활동지원 위탁사업 예산집행에 대하여

○ 2015년 위탁사업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명	참여인원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안산자락길 행복나눔이 외 7개 사업	440명	985,721	934,847	50,874	노인복지법 제23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사업기간 : 2015.1.1. ~ 12.31.
- 수탁기관 :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
- 참여자격 : 서대문구 거주 만 65세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위 안산자락길 행복나눔이 외 7개 사업은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참여대상으로 하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노인복지법 제23조 및 지방자치법 제104조,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에 의하여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에 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며, 2015년도 위 8개 위탁사업에 대하여 지원된 예산은 총 985,721천원이며, 그 중 934,847천원이 집행되었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면 「민간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규칙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가 동 조례·규칙 등의 규정에 의하여 위 8개 위탁사업의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음.

(문제점)

- 위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 규정에 의하면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성과점검을 포함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 8개 사업 중 일부사업에서는 수탁기관의 업무담당직원의 부족과 수탁업무과중으로 인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고, 만65세 이상 노인들의 참여 대상자에 대한 현지답사 확인 등이 어려워 부정수급 등 예상치 못한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환수조치도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개선방안)

- 앞으로 해당부서에서는 위 8개 위탁사업이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참여대상으로 하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동 위탁사업의 참여인원 모집(선정)에서부터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수탁기관의 의무 준수 여부 등,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부정수급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정수급사례가 있을 경우 환수조치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 해당부서 : 어르신복지과, 정책기획담당관, 위탁사업이 있는 전 부서

13. 홍제천 유지관리에 예산 집행내역 분석

○ 홍제천 자연하천 조성 개요

- 사업기간 : 2003. 11. 28. ~ 2011. 5. 10.(7년 5개월)
- 위 치 : 한강 합류점 ~ 사천교 ~ 홍지문
- 규 모 : L = 8.52km(서대문구간 = 6.12km)
- 총사업비 : 69,207백만원(시비 55,259백만원, 구비 13,948백만원)

○ 연도별 홍제천 유지관리에 예산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연도별	예산 집행총액	주요예산 집행내역			비 고
		유지관리용역비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안전관리)	시설비 (시설물 정비 등)	
2013	1,768,060	875,135	593,550	299,375	2015 유지관리 용역비에 시비 623,240천원이 포함되어 있음.
2014	1,486,328	776,512	468,222	241,594	
2015	1,955,895	1,272,002	472,219	211,674	

○ < 위 2015 (하천)유지관리 용역비 집행내역 1,272,002천원 >

- 인건비 : 411,756천원
 - 토목분야 유지관리 5명 : 271,532천원
 - 기계·전기분야 유지관리 4명 : 140,224천원
- 하상여과시설(취수정) 써징, 송수펌프장 준설 등 : 311,922천원
- 하상준설(홍제천, 불광천 일부) : 139,036천원
- 기계·전기시설 보수(하상여과시설, 송수펌프장, 중앙제어감시 등) : 59,726천원
- 산책로, 자전거도로포장·정비 등 : 154,000천원
- 옹벽보수, 난간, 안내표지판 정비 등 : 195,562천원

< 합계 : 1,272,002천원 >

○ 홍제천 자연형 하천조성공사는 2003년부터 2011년까지 7년 5개월에 걸쳐 총사업비 69,207백만원(시비 55,259백만원, 구비 13,948백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총연장 6.12km(서대문구간)의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한 공사임.

○ 위 연도별 홍제천 유지관리예산 집행내역에 의하면 2013년도에 집행된 예산보다 2014년도에 집행된 예산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2015년도에는 그 집행총액이 전년도인 2014년도보다 469,567천원이나 더 지출되었음을 알 수 있음.

그리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 주요예산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집행규모에서는 유지관리용역비와 공공운영비가 가장 많고, 공공운영비(전기요금 등)와 시설비(시설물정비 등)는 매년 크게 변동이 없으나, 2015년도에는 유지관리용역비가 총 1,272,002천원(시비포함)이 집행되어, 전년도(2014년)보다 495,490천원이 더 집행되어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문제점)

○ 위 2015 유지관리용역비 1,272,002천원의 세부집행내역을 살펴보면, 토목·전기·기계분야의 유지관리직원 9명의 인건비가 411,756천원이며, 하상준설비가 139,036천원, 그 외 기계전기시설물보수, 산책로 자전거도로포장 정비, 옹벽보수 등의 예산이 409,288천원임.

-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예산은 매년 거의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위 유지관리용역비와 시설비는 시간이 갈수록 각종시설물의 노후 등으로 매년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홍제천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보여짐.

(개선방안)

- 앞으로 해당부서에서는 기간이 경과될수록 각종시설의 노후 등으로 이에 필요한 유지관리예산이 매년 계속해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하천시설물정비를 포함한 하상여과시설, 전기·기계분야시설 등 홍제천 내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시설물들의 안전관리는 물론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 2015년도에 유지관리용역비의 일부(623,240천원)가 서울시로부터 지원되었다고는 하나, 앞으로 서울시로부터 위 용역비 예산이 좀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담당부서와 업무담당부서가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 해당부서 : 안전치수과, 푸른도시과, 토목과, 정책기획담당관

14. 우수사례

- 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통합관리 성과

○ 연도별 세외수입 징수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구분	2014회계연도			2015회계연도			비 고
	부과액	징수액	징수율 (%)	부과액	징수액	징수율 (%)	
합계	66,339	30,926	46.0	69,606	34,415	49.4	—
현년도	33,155	28,367	85.6	36,887	25,519	80.0	40개부서 102개 항목
과년도	33,184	2,559	7.7	32,719	4,896	14.9	17개부서 71개 항목

○ 2015년도 서대문구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액총액은 32,719백만원이며, 그 중에서 4,896백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이 14.9%에 달하고, 징수실적은 전년(2014년) 대비 징수액과 징수율 측면에서 각각 2,337백만원과 7.2%가 더 향상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금액(4,896백만원)면에서는 제2위이고, 징수율(14.9%)면에서는 제3위라는 대단히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서대문구가 타자치구와 비교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통합관리 계획(2014.9.26.)」을 다소 늦게 시행하였지만, 위와 같은 우수한 성과를 거양하게 된 것은

- 2015.1.1.부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업무전담부서(세무2과)를 별도로 지정하여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통합관리를 하였고,

- 대형금융기관의 우수한 채권추심경력자 2명을 시간제계약직으로 채용하여 전자예금압류 및 고액채납자에 대한 특별관리를 하여 분납을 유도하는 등 전문기법을 활용하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기에, 위와 같은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 한편 서대문구 2015년도 세입결산현황에 의하면 구 세외수입 징수액 총액(특별회계포함)이 구 전체 세입총액에 대하여 재원별 구성비가 9.6%에 달하고 있어 세출예산편성에도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앞으로 해당부서(세무2과)에서는 위와 같은 차별화된 징수방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국세징수법 등을 통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부서 : 세무2과 등 세외수입이 있는 전 부서